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2. 17 선고 2019가단116067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 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기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

변론 종결 2021. 1. 27

판결 선고 2021. 2. 17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. 6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4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6. 9. 19. 소외 C에게 20,000,000원을 이자 연 6.29%, 연체이자 연12.29%, 변제기 2008. 9. 20.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최종 변제기는 2018. 9. 20.까지 연장되었다), 소외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
나. 원고는 2007. 2. 12. D에게 10,000,000원을 이자 연 6.6%, 연체이자 연 15%, 변제기 2009. 2. 12.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최종 변제기는 2017. 2. 12.까지 연장되었다),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
다. C은 2015. 6. 3.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을 매도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2015. 6. 4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5. 6. 4. 접수 제353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: 갑 제1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,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, 을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18. 8. 1.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1090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는 2018. 8. 1.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. 9.

24. 제기되었으므로,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지현

별지